

申 珏 澈 / 법제처 법제연구관

컴퓨터사용 사기죄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은 전통적인 법체계의 대폭적인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외국의 법제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상 대응 또는 고려할 문제를

연재, 정보화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모색해 본다. ... 편집자註

컴퓨터범죄의 특성과 유형

오늘날의 사회를 “신용사회”라고도 한다.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각 은행 또는 신용카드업자로 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보통 3~4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현금 인출 및 차용등 현금거래기능으로 사용되고, 또한 물품구입이나 용역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사용되는 등 신용사회에서 매우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신용카드업법(1987. 5. 30, 법률 제3,928) 제1조를 보면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신용거래법(신용카드업)이 급격히 발전하게 되는 그 바탕은 말할 필요없이 컴퓨터시스

템의 발달이며, 정보화사회는 신용사회와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사용 사기죄」는 정보화사회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범죄로서 컴퓨터의 부정조작이나 신용카드(현금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위조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기타 물품구입, 역무제공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물론 형법상이론으로는 컴퓨터범죄에 관하여 상세하게 구성요건이 명문화 되어 있지만, 오늘날 컴퓨터문명의 발달과 함께 종종 발생하는 「컴퓨터사용 사기죄」는 대부분 신용카드(또는 현금카드)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카드를 이용, 금품을 절취하거나 부정사용(물품구입)하는 범죄행위는 타인의 주머니나 은행등에 직접 침입·접근하지 아니하고 전국 곳곳의 원격지에 설치된 금전자동지급기에서 발각, 또는 체포되는 등의 위험부담없이 편안하게(?) 금품을 인출, 절취함으로써 신용사회 기반구축의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컴퓨터범죄는 학자에 따라 그 분류를 약간 달리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데이터의 부정조작-데이터·프로그램등의 부정작출, 변괴, 말소등
- ② 데이터의 부정입수-데이터·프로그램등의 부정탐지, 입수, 누설등
- ③ 컴퓨터의 무권한사용-타인의 컴퓨터를 무권한으로 사용, 즉 재산·시간등의 절도
- ④ 컴퓨터 파괴-컴퓨터 시스템(하드웨어, 보조장치, 통신회선등)의 파괴, 절단
- ⑤ CD범죄-현금자동지불기등을 이용한 금전인출등 사기행위

위의 유형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때때로 발생되고 있는 컴퓨터사용 사기행위(③과⑤)에 관하여 일본·서독·미국등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토대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외국의 입법례

종래의 형법에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만(속여서)하여” 재산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형법 347조) 즉 보호대상이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범죄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닌 기계(컴퓨터)를 기만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을 경우 처벌한다는 점에서 형법학자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이나 모순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서독등의 법에서는 “사람의 사무처리에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컴퓨터)”라는 표현을 명문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사무처리 과정(데이터 입력, 프로그램 설계등)에서 사람이 개입되고, 컴퓨터가 작동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를 교묘하게 기만(허위정보, 부정지령등)하는 행위는 처벌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컴퓨터의 부정조작은 간접적이지만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컴퓨터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약 10여년간의 긴 논쟁이 있었다.

범죄행위를 처벌하는데 있어서의 관건은 범행의 고의성 포착과 명백한 증거자료의 확보에 있으며, 또한 범죄구성에

있어서는 형법상의 명문화된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즉 민주국가에서 기본이 되는 죄형법정주의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첨단기술과 관련되어 있어 고의성이나 증거의 포착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고 이를 종전의 형법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방치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일본등 컴퓨터문명 선진국의 경우 70년대부터 컴퓨터범죄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그 입법적 대응은 비교적 늦었다.

미국은 84년 연방형법전에서, 또 일본과 서독은 각각 87년에 형법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는 등 근래에 와서야 입법적 대응이 있었으나 범죄자의 검거·처벌에는 다른 일반범죄와 비교하여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형법전에서 새로 설정한 「컴퓨터사용 사기죄」의 범죄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은 크게 2가지로 분류 된다.

사람의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컴퓨터(전자계산기)에 대

①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지령(명령)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재산권의 득상(得喪), 변경에 관련되는 불실한 전자적기록(디스크, 테이프등)을 작성하거나,

② 재산권의 득상(得喪), 변경에 관련되는 허위의 전자적기록을 사람의 사무처리에 쓰도록 제공하여 재산성 불법으로 이익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도록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일본형법 제 246조의 2)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표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㉑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줍거나 또는 위조,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㉒은행등의 단말기에서 허위의 입금데이터(예금데이터)를 자기 또는 타인의 구좌에 입력시키고 현금을 절취하는 행위

㉓컴퓨터 조작원(프로그램러)이 다른 사람의 예금(예금데이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구좌에 이체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부정지령)하는 행위

㉔은행의 고객원장화일에 접근하여 정규의 자기디스크(또는 드럼, 테이프등)를 내용 허위의 자기디스크로 바꿈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등이다.

서독의 경우는 1987년 3월에 형법 263조의 2와 형법 270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사용 사기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방법학적 측면에서도
 형법을 개정,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조를 각각 신설 또는 개정하여 「컴퓨터사용 사기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불실하게 작성하거나 부정한 데이터의 사용등으로 컴퓨터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자는 처벌한다.」(서독형법 제263조의 2)와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등 법률상 거래에 있어서 기만과 같은 것으로 본다.」(서독형법 제270조)가 그것이다.

미국의 입법례로는 1984년 10월 미합중국 연방형법전을 개정하면서 「1984년 위조약세스 및 컴퓨터사기·남용법」을 새로운 조문으로 신설하였다.

그밖에 영국·프랑스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컴퓨터 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법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전산망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신용카드가 대량 이용되고 있어 컴퓨터 사용 사기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발생되어도 기업등에서 회사의 신용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해 노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도 컴퓨터범죄에 관하여 무거운 형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컴퓨터범죄 처벌법」의 입법은 범죄행위의 사전예방과 새로운 컴퓨터범죄행위의 수사기능 확보, 처벌에 있어서 법 적용 및 해석사례의 축적등 예방법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컴퓨터범죄 방지와 관련된 형법개정에 관하여 법무부등 관련부처에서 심도있게 입법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91년 정기국회에서 형법전의 개정이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현행 형법규정의 사기죄(형법347조), 부당이득죄(형법349조), 절도죄(형법 329, 330, 331조)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있으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등 법이론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관하여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에서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 이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컴퓨터에 부정조작등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 사기죄의 처벌이라고 볼 수 없고, 신용카드에 대한 부정사용을 처벌하는 제한적 규정이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매우 좁다.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범죄 처벌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다음은 “컴퓨터 관련 업무방해죄”를 수록할 예정임)